



군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군 보

|        |         |
|--------|---------|
| 선<br>람 | 기 관 의 장 |
|        |         |

제 626호      2026. 6. 15.

## 고 시

- 순창군 고시 제2026-111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 1
- 순창군 고시 제2026-117호 순창군 적성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따른  
순창 군 관리계획(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
- 순창군 고시 제2026-118호 순창군 광역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따른  
순창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3

## 공 고

- 순창군 공고 제2026-635호 순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
- 순창군 공고 제2026-637호 순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14

|        |  |  |  |  |  |  |  |  |
|--------|--|--|--|--|--|--|--|--|
| 회<br>람 |  |  |  |  |  |  |  |  |
|--------|--|--|--|--|--|--|--|--|

발 행 : 순창군 (편집 기획예산실)

순창군 고시 제2026-111호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 폐지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5. 29.

## 순 창 군 수 (인)

### ○ 도로명주소 폐지 : 1건

| 구분 | 관할읍면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br>(도로명+건물번호) | 건물번호       |         | 비고 |
|----|------|--------------|---------------------|------------|---------|----|
|    |      |              |                     | 폐지일        | 사유      |    |
| 1  | 구림면  | 금천리<br>364-9 | 금평길 28-34           | 2026.5.29. | 건축멸실 확인 |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1층 민원과(☎650-1441)에 문의 또는 주소정보누리집(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해 공법관계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순창군 고시 제2026-117호

**순창군 적성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따른  
순창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6-103호(2026. 3. 20.)호와 관련하여 수도사업인가된 순창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5일  
**순 창 군 수**

## 1. 순창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군계획시설(유통 및 공급시설 : 수도공급설비)

## 1)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br>표시<br>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적(㎡)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변경 | 5              | 수도공급설비<br>(적성정수장) | 순창군 적성면 내월리<br>442-1번지 일원 | 21,023 | 증)8,405 | 29,428 | 순창군고시<br>제2010-47호<br>(2010.10.22.) |    |
| 신설 | 8              | 수도공급설비<br>(인계배수지) | 순창군 인계면 가성리 산<br>3-5번지 일원 | -      | 증)2,524 | 2,524  | “금회”                                |    |

## 2)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번호 | 시 설 명             | 결정(변경) 내용                                                                                                | (결 정) 변 경 사 유                                   |
|--------|-------------------|----------------------------------------------------------------------------------------------------------|-------------------------------------------------|
| 5      | 수도공급설비<br>(적성정수장) | ○ 위치 및 면적변경<br>- 위치 : 적성면 내월리 442번지 일원<br>→ 적성면 내월리 442-1번지 일원<br>- 면적 : 21,023㎡ → 29,428㎡<br>(증 8,405㎡) | ○ 기 조성된 정수장 구역계를 현실화하고,<br>수도시설 확충을 통한 공공상수도 공급 |
| 8      | 수도공급설비<br>(인계배수지) | ○ 신설 : 2,524㎡                                                                                            | ○ 수도시설 확충을 위한 수도공급설비 신설                         |

## 2. 관계도서 및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 생략

- 기타 도면 등 관계 서류는 순창군 상하수도과(063-650-1485) 및 건설과(063-650-1827)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 순창군 고시 제2026-118호

**순창군 광역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따른  
순창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6-104호(2026. 3. 20.)와 관련하여 수도사업인가된 순창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군관리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5일  
**순 창 군 수**

## 1. 순창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군계획시설(유통 및 공급시설 : 수도공급설비)

## 1)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br>표시<br>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적(㎡)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신설 | 9              | 수도공급설비<br>(통합배수지) | 순창군 유등면 건곡리 산<br>5-1번지 일원   | -     | 증) 4,980.8 | 4,980.8 | “금회”   |    |
| 신설 | 10             | 수도공급설비<br>(금과배수지) | 순창군 팔덕면 창덕리 산<br>112-4번지 일원 | -     | 증) 548     | 548     | “금회”   |    |
| 신설 | 11             | 수도공급설비<br>(구림배수지) | 순창군 구림면 구곡리<br>51-6번지 일원    | -     | 증) 447.9   | 447.9   | “금회”   |    |

## 2)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번호 | 시 설 명             | 결정(변경) 내용       | (결 정) 변 경 사 유                                |
|--------|-------------------|-----------------|----------------------------------------------|
| 9      | 수도공급설비<br>(통합배수지) | · 신설 : 4,980.8㎡ | · 기 조성된 배수지 구역계를 현실화하고, 수도시설 확충을 통한 공공상수도 공급 |
| 10     | 수도공급설비<br>(금과배수지) | · 신설 : 548㎡     | · 수도시설 확충을 통한 공공상수도 공급                       |
| 11     | 수도공급설비<br>(구림배수지) | · 신설 : 447.9㎡   | · 수도시설 확충을 통한 공공상수도 공급                       |

## 2. 관계도서 및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 생략

- 기타 도면 등 관계 서류는 순창군 상하수도과(063-650-1485) 및 건설과(063-650-1827)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 입 법 예 고 문

순창군 공고 제2026 - 635 호

순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일

순 창 군 수

## 순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지방회계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금고 약정금리 공개 규정을 신설 및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사항에 따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의 공정성·객관성 강화 규정을 신설하여 금고지정 및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금고 약정금리 공개 규정 신설 (안 제9조 제4항)
  -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개

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일부 조정 (안 별표)

－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배점 및 용어 변경

■(가)목 : 정기예금 예치금리(7점) → (8점)

■(나)목 : 공공예금 적용금리(6점) → 수시입출금식 예금적용 금리(8점)

■(라)목 :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점) 삭제

다.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신설 (안 별표)

라.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안 반영에 따른 조례 정비

－ 심의위원회 위원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서 제외한다는 중복 항목 정비(안 제5조 제2항)

－ 심의위원회 위원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안 제5조의2)

### 3. 의견제출

가. 순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창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56039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순창군청 재무과  
(☎ 063-650-1353, 1368, Fax 063-650-1159)

또는 순창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unchang.go.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무방

###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재무과 징수담당 양선경 (☎063-650-135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순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본문 중 “구성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단, 위원장은 평가는 하지 못하고 회의 진행만 한다.”를 “구성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단, 위원장은 평가는 하지 못하고 회의 진행만 한다.”로 하고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심의위원회 제척·기피·회피) ①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법인·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심의위원회 심의·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 안건의 심의·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군수는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군보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체결되어 있는 금고 약정은 약정기한까지 종전의 조례에 따라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붙임 1****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br>① (생략)<br>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이상 12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군의원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가(과반수 이상)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u>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단, 위원장은 평가는 하지 못하고 회의 진행만 한다.</u><br>③ ~ ⑥ (생략)<br><br><u>&lt;신 설&gt;</u> |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br>① (현행과 같음)<br>② -----<br>-----<br>-----<br>-----<br>-----<br>-----<br><u>구성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단, 위원장은 평가는 하지 못하고 회의 진행만 한다.</u><br><br>③ ~ ⑥ (현행과 같음)<br><br><u>제5조의2(심의위원회 제척·기피·회피)</u><br><u>①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평가에서 제척된다.</u> |

| 현행                                              | 개정안                                                                                                                                                                                                                                                                                                                                                                                                                                                                                                                                                      |
|-------------------------------------------------|----------------------------------------------------------------------------------------------------------------------------------------------------------------------------------------------------------------------------------------------------------------------------------------------------------------------------------------------------------------------------------------------------------------------------------------------------------------------------------------------------------------------------------------------------------|
| <p>제9조(공표·약정) ① ~ ③ (생략)</p> <p><u>〈신설〉</u></p> | <p>1. <u>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u></p> <p>2. <u>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u></p> <p>3. <u>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법인·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u></p> <p>②<u>심의위원회 심의·평가의 이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u></p> <p>③<u>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 안건의 심의·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u></p> <p>제9조(공표·약정)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u>군수는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군보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u></p> |

# [ 별표 ] 순창군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4조 관련)

## I. 평가항목 및 배점표

| 개 정 안                         |                                                                                                                                                                                                                                                                                                                              |                          |
|-------------------------------|------------------------------------------------------------------------------------------------------------------------------------------------------------------------------------------------------------------------------------------------------------------------------------------------------------------------------|--------------------------|
| 항 목                           | 세 부 항 목                                                                                                                                                                                                                                                                                                                      | 배 점                      |
| 계                             |                                                                                                                                                                                                                                                                                                                              | 100                      |
|                               | 소 계                                                                                                                                                                                                                                                                                                                          | 27                       |
|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br>- 국외평가기관 (4점)<br>- 국내평가기관 (4점)<br>※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 (8)                      |
|                               |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br>-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br>※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 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br>-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br>-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br>-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유동성, 2점)<br>*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br>*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 가능 | (19)                     |
|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 소 계                                                                                                                                                                                                                                                                                                                          | 20                       |
|                               |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br>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 금리<br>※ 수시입출금 예금 : 공공예금, MMDA, 보통예금<br>다. 군 대출금리                                                                                                                                                                                                                                             | (8)<br>(8)<br>(4)        |
|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 소 계                                                                                                                                                                                                                                                                                                                          | 21                       |
|                               | 가. 관내 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br>※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br>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br>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 (8)<br>(6)<br>(7)        |
| 4. 금고업무 관리능력                  | 소 계                                                                                                                                                                                                                                                                                                                          | 25                       |
|                               |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br>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br>다. 전산시스템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br>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 (6)<br>(8)<br>(8)<br>(3) |
|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 소 계                                                                                                                                                                                                                                                                                                                          | 7                        |
|                               |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br>나. 군 과의 협력사업계획<br>*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br>“군 과의 협력 사업”은 ‘계 획’으로만 평가                                                                                                                                                                                                                               | (5)<br>(2)               |

## Ⅱ.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 1. 일반원칙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한다.

다.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만점을 1순위로 하여 10%씩 균등 차감한다. 다만, 항목 5(군과의 협력사업 계획)는 5%씩 균등 차감한다.

### 2. 평가항목별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점)

1)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배점하고,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하여 배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배점(8점)을 평가

2) 주요 경영지표 현황(19점)

- 금융기관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전성, 6점)로 평가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① 총자본비율(6점)
  - ② 고정이하여신비율(6점)
  - ③ 자기자본이익율(5점)
  - ④ 유동성커버리지비율(2점)

나.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1) 정기예금 예치 금리(8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 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 금리(8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공공예금, MMDA, 보통예금)의 금리 수준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군 대출금리(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21점)

1) 관내지점의 수,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8점)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관내 영업점의 분포도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6점)

- 최근 3년 이내 기간 동안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점)

-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가상계좌 등)증진방안, 납세자 편의성 제고방안(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 은행이용, 지방세납입을 위한 타 은행 이용자 수수료혜택)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금고업무 관리능력(25점)****1)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점)**

- 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 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Cash-flow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점)**

- 자치단체의 금고업무 취급경험 및 운영능력(금고업무 수행조직 및 인사 운영계획 등)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8점)**

-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 세입·세출 과정상 발생 가능한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인증 등 관리시스템 구축, 자금관리 및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점)**

- OCR센터 설치 및 운영능력 등을 비교·평가

**마.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7점)****1) 지역사회기여(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활동, 지역사회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실적으로만 평가)

**2) 군과의 협력사업(2점)**

- 자치단체(순창군)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금고 약정기간동안 지원하기로 제안한 협력사업비 금액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계획으로만 평가)

## 입 법 예 고 문

순창군 공고 제2026- 637 호

「순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를 폐지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일

순 창 군 수

### 순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1. 폐지이유

「순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별표에 금고 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규정함에 따라 시행규칙의 규정 사항이 조례에 반영되어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순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

### 3. 의견제출

가. 순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창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56039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순창군청 재무과

(☎ 063-650-1353, 1368, Fax 063-650-1159

또는 순창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unchang.go.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무방

###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재무과 징수담당 양선경

(☎063-650-135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순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 순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순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